

예천군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. 8. 12.

예천군의회의장



1. 제정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,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·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
나.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
-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
-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 및 제10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8월 18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예천군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,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·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회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2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
 - 나. 예천군의회
 - 다. 그 밖에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재산을 출자·출연한 기관 중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예천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)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
3.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
4.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
2.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3.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군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

경우

2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
경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2.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
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
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
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
2.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
3.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
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5. “1회용품”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 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 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 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 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 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
 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 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